
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세부심사기준

2010. 11. 10



신규 방송사업 정책FT
[방송정책국]

목 차

I. 승인심사 개요	1
1. 승인 대상 및 승인신청 자격	1
2.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	1
3. 기타 사항	2
II. 기본 방향	3
III.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	4
1.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·배점 원칙	5
2.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·배점	6
3.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	11
IV. 평가방법	12
1. 주요주주의 범위	13
2.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	15
3. 5%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	16
4. 5%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	18
5.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범위	19
6.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	20
7. 기타 평가방법	21
8. 평가요소,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	22
〈 첨 부 〉	
1. 평가요소,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	23

I. 승인심사 개요

1 승인 대상 및 승인신청 자격

□ 승인 대상 방송사업

- 방송법 제9조제5항에 규정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

□ 승인신청 자격

-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설립예정법인(이하 신청법인)으로서 방송법 제8조(소유제한 등), 제13조(결격사유), 제14조(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)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함

2 승인 조건 및 승인장 교부

□ 승인 조건

- 위원회는 승인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의 확실한 이행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

※ 승인 조건 예시로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이행, 주요주주의 지분 처분 금지 등을 들 수 있음

□ 승인장 교부

- 선정된 신청법인이 계획한 자본금 납입을 완료한 후, 법인등기부 등본, 승인조건 이행 담보를 위한 이행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한(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)까지 제출하는 경우, 승인장을 교부함

-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서류의 내용은 백서 등을 통해 공개될 수 있음
- 신청법인은 심사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
- 신청법인은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(예를 들어, 부속서류 추가 제출, 날짜·단위·성명 등 오기·누락의 수정, 서명·날인의 보완 등)에 한하여 보정자료 제출 가능
 - ※ 단, 추가 제출할 수 있는 부속서류는 승인 신청서류 접수 시 조건표에 명시된 부속서류에 한함
 - 사업계획서의 실체적 내용을 변경하여 심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(예를 들어, 주주구성의 변경 등)은 보정 불가
 - 제출서류의 보정이 필요한 경우, 승인 신청서류 접수마감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신청법인이 보정하여 제출할 수 있음
 - 신청법인이 제출한 보정사항의 채택 여부는 심사위원회가 판단
- 위 보정 규정에도 불구하고,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각 신청법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
- 승인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신청법인이 부담하며,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법인의 동의를 얻어 승인 심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음
- 관계 기관 의견 조회
 - 문화체육관광부, 고용노동부, 금융위원회, 공정거래위원회, 국세청, 관세청, 중소기업청, 경찰청 등에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 조회

II. 기본 방향

□ 합법·합리적이고 공정·공명한 심사 진행

- 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심사 전에 공개하여,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심사결과의 정당성을 확보
 - 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가 결정

◇ 심사기준은, 심사사항(대분류) → 심사항목(중분류) → 세부심사항목(소분류) → 평가방법으로 구성

- 평가방법은 '평가요소'(세부심사항목을 세분화), '평가지표'(계량/비계량), '세부평가방법'(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, 평점 및 과락기준 등)으로 구성

□ 정책목표를 고려한 심사기준 마련

-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*를 고려하여 심사항목의 배점, 세부 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, 평가방법을 마련

※ 심사사항의 구성 및 배점, 심사항목의 구성은 기본계획에서 정하였음

【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책목표 】

- ◇ 융합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
- ◇ 방송의 다양성 제고를 통한 시청자 선택권 확대
- ◇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및 유료방송시장의 선순환 구조 확립
- ◇ 경쟁 활성화를 통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

□ 심사기준의 객관성 제고

-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, 계량평가 비중을 강화

【 계량평가 비중 】

구 분 (연도)	위성방송 ('00)	위성DMB ('05)	지상파DMB ('05)	보도FM ('07)	경인만방 ('07)	IPTV 제공 ('08)	종편PP ('10)	보도PP ('10)
비 중	28%	19%	18.5%	17%	10%	10%	24.5%	20.0%

Ⅲ. 심사항목 및 세부심사항목

1.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·배점 원칙

-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심사항목에 배점을 부여하고, 세부심사항목을 구성하여 배점을 부여하는 기본 원칙을 제시

2. 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·배점

- 각 심사사항 별로 심사항목의 배점, 세부심사항목의 구성과 배점을 제시

3.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

-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를 적용할 심사항목을 선정하는 원칙을 제시

□ 심사항목 배점

- 기본계획에서 정한 심사사항별 배점 및 19개 심사항목을 근거로 배점을 부여
- 심사사항 배점을 하위 심사항목 간 정책목표 관련성, 주요 내용 등을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배분

□ 세부심사항목 구성

- 기존 방송사업자 선정 시의 심사기준을 고려
- 심사항목이 지향하는 정책목표에 대한 기여도가 큰 항목으로 세부심사항목을 구성
- 세부심사항목 배점 간 편차를 일정 범위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심사항목을 분할 또는 통합

□ 세부심사항목 배점

- 심사항목 배점을 하위 세부심사항목 간 정책목표 관련성, 주요 내용 등을 비교하여 차등적으로 배분
- 정책목표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심사항목에 속하는 세부심사항목과의 형평성을 확보
- 종편PP와 보도PP의 정책목표 차이, 사업적 특성을 반영하여 배점을 조정

2

심사사항별 심사항목 배점 및 세부심사항목 구성 · 배점(1,000점 만점)

가. 방송의 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 (총편 250점, 보도 3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총편	보도
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(총 70, 보 90)	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	30	30
	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	20	35
	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	20	25
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 (총 70, 보 80)	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30	30
	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20	25
	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	20	25
신청법인의 적정성 (총 60, 보 70)	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	25	30
	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	20	25
	구성주주 중복참여(계량)	15	15
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(총 50, 보 60)	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	20	25
	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	15	20
	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	15	15

나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(종편 250점, 보도 2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종편	보도
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 계획(종 90, 보 80)	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계획의 우수성	35	25
	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의 독창성	25	25
	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	30	30
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 (종 80, 보 60)	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	35	25
	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	30	20
	방송프로그램 구매 계획의 적절성	15	15
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 계획(종 80, 보 60)	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	35	25
	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	25	20
	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	20	15

다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(총편 200점, 보도 25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총편	보도
사업추진계획 (총 30, 보 40)	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	15	25
	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	15	15
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(총 30, 보 40)	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	15	20
	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	15	20
납입자본금 규모 (총 60, 보 60)	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(계량)	60	60
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(총 35, 보 45)	자금조달 계획의 적정성	20	25
	자금운영 계획의 적정성	15	20
사업성 분석 (총 15, 보 25)	추정 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	15	25
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 (총 30, 보 40)	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	15	20
	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	15	20

라. 재정 및 기술적 능력 (총편 200점, 보도 15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총편	보도
재정적 능력 (총 90, 보 60)	자기자본 순이익률(계량)	30	20
	부채비율(계량)	30	20
	총자산 증가율(계량)	30	20
자금출자 능력 (총 60, 보 45)	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합계 對 투자(출자)금액의 적정성(계량)	15	10
	자기자본 對 투자(출자)금액의 적정성(계량)	15	10
	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(계량)	30	25
기술적 능력 (총 50, 보 45)	방송시설 설치·운영계획	30	25
	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	20	20

마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(종편·보도 1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종편	보도
방송발전 기여계획 (종 40, 보 40)	방송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	25	25
	유료방송시장 활성화 기여계획의 우수성	15	15
콘텐츠산업 육성·지원계획 (종 40, 보 40)	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	20	20
	콘텐츠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	20	20
출연금(종 20, 보 20)	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(계량)	20	20

3

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

◇ 19개 심사항목 중 승인 최저점수(배점의 60%)를 적용할 심사항목을 선정

□ 선정 원칙

- 정책목표를 고려, 심사항목을 4개의 범주로 구별하고 정책목표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심사항목을 선정
- '납입 자본금 규모', '신청법인의 적정성*'은 기본계획에서 승인 최저점수 적용 대상 심사항목으로 기 확정

※ "해당 심사항목은 승인 최저점수가 적용되는 '특정 심사항목'으로 설정"

□ 승인 최저점수 적용 심사항목 ⇒ 총 6개 심사항목

- 공익성 관련 ⇒ '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', '신청법인의 적정성'
 - ※ 관련 항목 : ① **공적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**, ②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, ③ **신청법인의 적정성** ④ 시청자 권익실현 방안, ⑤ 출연금
- 콘텐츠 시장 활성화 관련 ⇒ '콘텐츠산업 육성·지원계획'
 - ※ 관련 항목 : ①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, ②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, ③ 기술적 능력, ④ 방송발전 기여계획, ⑤ **콘텐츠산업 육성·지원계획**
- 산업 경쟁력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반 관련 ⇒ '방송 프로그램 기획·편성계획', '조직 및 인력운영계획'
 - ※ 관련 항목 : ① **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계획**, ② 사업추진계획, ③ **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**, ④ 사업성 분석, ⑤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
- 사업의 기반이 되는 재무적 역량 관련 ⇒ '납입 자본금 규모'
 - ※ 관련 항목 : ① **납입 자본금 규모**, ②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③ 재정적 능력, ④ 자금출자 능력

IV. 평가방법

1. 주요주주의 범위

-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,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

2. 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

-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

3. 5%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

- 기본계획에서 정한 지분 5%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시, 배제 방안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

4. 5%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법

- 기본계획 의결 시 논의된 지분 5%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감점방안을 마련

5.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

-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설립예정법인과 기존법인으로 나누어 제시

6.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

-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시

7. 기타 평가방법

- 계량 및 비계량평가 시 평점방법, 출연금 평가방법 등을 제시

1

주요주주의 범위

◇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이 되고, 재무제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주요주주의 범위를 정하는 방안을 제시

□ 주요주주의 적용 영역

- 주요주주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'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도', '신청법인의 적정성', '재정적 능력', '자금출자능력'임

※ 단, 주요주주 이외의 구성주주를 평가하는 심사항목은 '신청법인의 적정성'임

- 주요주주는 주금 납입계약서, 인감증명서, 이사회 결의서, 법인등기부등본, 최근 3년간의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실적, 최근 4년간의 재무제표·감사보고서·결산서, 신용등급 등을 제출하여야 함

※ 단, 주요주주 이외의 구성주주는 주금납입 계약서, 인감증명서,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제출

- 주요주주는 승인장 교부 후 일정기간 동안 지분 매각 등 처분이 원칙적으로 금지됨

□ 주요주주의 범위

- 지분 5% 이상 보유 주주와 지분 1% 이상 보유 주주 중에서 다량 보유자순 합계가 51%까지인 주주

- 지분 5%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모두 주요주주에 해당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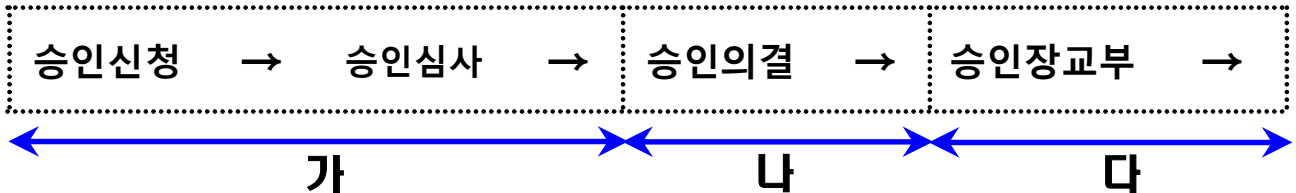
- 지분 5% 이상 보유 주주의 지분율 합이 51% 미만일 경우, 지분 1% 이상 지분 5% 미만을 보유한 주주 중에서 지분 다량 보유자 순 합계 51%까지인 주주를 추가

※ 단, 합계가 51%까지인 주주가 복수인 경우, 신청법인이 지정하는 1인의 주주로 하며, 지분 1% 이상 보유 주주의 합이 51% 미만인 경우에도 지분 1% 미만 주주는 포함하지 않음

2

주주구성 변경 금지 방안

◇ 최초 납입자본금의 출자 약속 불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구성의 변경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



가. 승인 신청 후 승인 의결 전 주주구성 변경

- 승인 신청서류 제출 이후 주주구성의 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함

나. 승인 의결 후 승인장 교부 전 주주구성 변경

- 승인장 교부 시 주요주주 구성(지분을 포함)이 승인 의결 시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승인을 취소
 - ※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
- 기타 주주의 변경에 대해서는,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방송통신 위원회에서 허용 여부 결정

다. 승인장 교부 후 일정 기간 주주구성 변경

- 승인장 교부 후 3년 동안 주요주주의 지분 매각 등 처분을 금지 하는 승인조건을 부여하고, 승인조건 위반 시 방송법령에 따라 처리
 - 신청법인은 신청서류 제출 시 위 내용이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 해야 함
 - ※ 상속이나 법원 판결 등으로 주요주주의 구성이 변경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인정

3

5%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방안

◇ 기본계획*에서 정한 지분 5%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시 배제 방안을 심사 단계별로 구분하여 제시

※ "어느 한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5% 이상 지분을 참여한 동일인(방송법 상 특수관계자를 포함)이 다른 종편·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 신청법인에 중복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, 이를 위반하는 구성주주에 대해서는 참여를 배제"

【 해당 사례 】



▶ 모든 신청법인에 5% 이상 중복참여

▶ 어느 한 신청법인에 5% 이상, 다른 신청법인에 5% 미만 중복참여

가. 심사 시 평가방안

□ 개요

- 지분 5% 이상 주주가 중복참여한 경우, 해당 주주의 출자예정 금액은 신청법인의 자본금으로 인정하되, 일부 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에 불이익을 부여

□ 평가방법

- '재정적 능력' 및 '자금출자능력'의 세부심사항목에서 신청법인의 주요주주 평가 시,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 부여
- '구성주주 중복참여'(세부심사항목)에서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해 감점 처리

※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'구성주주 중복참여'(세부심사항목) 배점에서 감점처리 (5%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안과 동일)

- 비계량 세부심사항목 심사의 경우,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

나. 승인 의결 후 처리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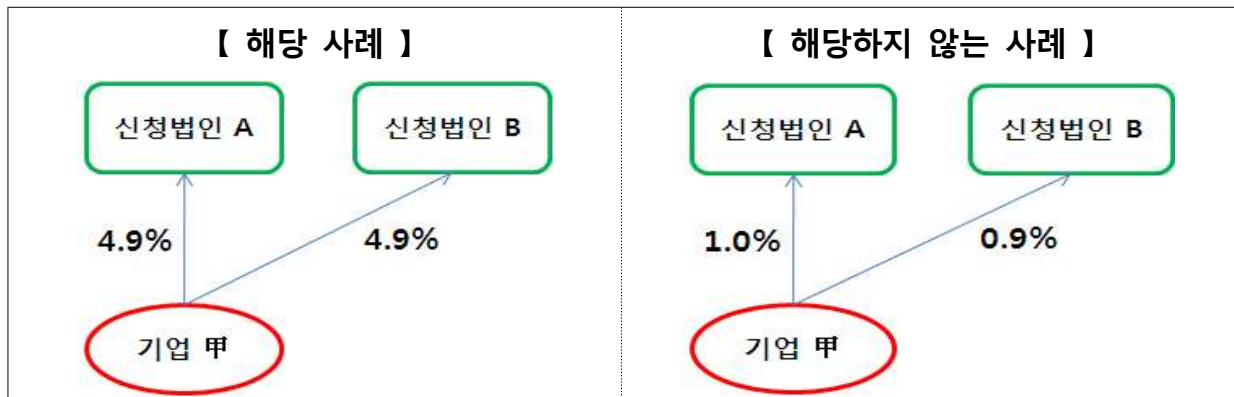
- 신청법인이 지분 5%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로 인해 심사 시 불이익을 받고도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, 중복참여 주주를 대체한 주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, 해당 주주가 주금납입을 완료한 후 승인장을 교부받을 수 있음

4

5% 미만 중복참여 주주 평가방안

- ◇ 기본계획 의결 시 논의*된 지분 5% 미만 중복참여 주주(방송법상 특수관계자 포함)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감점방안을 마련
- 상법상 이사에 대해 유지(留止)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,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한 기준인 지분 1% 이상 주주를 대상으로 함

※ "5% 미만 중복참여 주주가 있는 신청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안은 「세부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」 의결 시 결정"



□ 평가방법

-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만큼 '구성주주 중복참여'(세부심사항목) 배점에서 감점처리

※ 예를 들어, 세부심사항목 배점이 15점이고 중복참여한 甲 주주의 A 신청법인 지분율이 3%인 경우, A 법인은 0.45점(15점×3%) 감점

5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 범위

◇ 최초 납입자본금의 규모 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

가. 설립예정법인의 경우

- 최초 납입자본금이란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으로서, 자본금(법정 자본금)과 자본잉여금(주식발행초과금)을 합한 금액임

나. 기존법인의 경우

- 최초 납입자본금의 인정범위는 기존법인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설립 예정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함

- 기존법인이 겸업을 하는 경우 신규 방송사업을 위한 실질자본금*은 전체 자본에서 겸업자본 등을 제외한 것임

- ※ 실질자본금이란 방송법 제9조의2(방송채널사용사업의 등록요건)에 따른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만을 위한 자본을 의미

- 기존 법인의 최초 납입자본금은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(주식발행초과금을 포함) 및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실질자본금을 합한 금액임

- ※ 실질자본금 계산의 근거로 사용된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가 첨부되어야 함

- 기존법인은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5조제 1항을 준용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 기업진단요령에 규정된 실질자본금을 평가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
- ◇ 심사항목인 '자금조달 및 운영계획' 중 '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'(세부심사항목)에서 자본금 납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

□ 최초 납입자본금의 실현가능성 평가방법

- 모든 구성주주(기존법인의 경우 유상증자 참여주주)의 주금 납입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을 통해 자본금 납입 담보 방안을 비계량으로 평가
 - ※ 단, 주요주주의 경우 이사회 결의서(법인 아닌 사단·재단의 경우 의사결정기구의 결의서)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
 -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을 평가

□ 최초 납입자본금의 건전성 평가방법

- 최대주주가 다른 구성주주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*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에 대해 비계량으로 평가
 - ※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이란 일정 기간 후에 특정 금액으로 주식을 되사주는 바이백(buy-back)옵션 조항이 포함된 계약 등을 의미하며, 이는 사실상 차입거래에 해당하므로 순수한 출자행위로 보기 어려움
 -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 등을 체결하고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, 방송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허위·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

□ 계량평가 평점방법

- 자료를 미제출 한 경우, 또는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산출불능인 경우 최저점수로 처리

※ 법인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점의 80%를 미제출 연도분에 적용

-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,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

□ 비계량평가 평점방법

- 수, 우, 미, 양, 가로 등급을 부여한 뒤 평점 부여

등 급	의 미	평 점
수	매우 우수	해당 배점의 80% 이상 100% 이하
우	우수	해당 배점의 60% 이상 80% 미만
미	보통	해당 배점의 40% 이상 60% 미만
양	미흡	해당 배점의 20% 이상 40% 미만
가	매우 미흡	해당 배점의 0% 이상 20% 미만

- 세부심사항목별 평가점수는 심사위원의 평균을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,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

- 평균 산정 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제외(단, 최고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각각 1개의 심사점수만 제외)

□ 의견청취

- 신청법인의 사업계획 실현의지 판단, 사실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편성책임자(예정자 포함), 최대주주의 대표자

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음

□ 출연금 평가방법

-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

□ 주주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인 경우 평가방법

- 법인격 없는 조합 또는 펀드 등의 경우 심사 시 단체 자체를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모든 평가항목에서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평가함
 - 비법인 사단·재단의 경우 단체성이 강하므로 단체 자체를 평가
- 구성주주의 특수관계자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해당 단체의 출자자를 신청법인의 구성주주로 간주함

8

평가요소,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

○ 첨부 1. 참조

- ※ 비계량평가 항목의 경우, 예시로 기술된 세부평가방법은 반드시 적용되며, 그 외 심사위원회의 판단으로 세부평가방법이 추가될 수 있음

【첨부 1.】

평가요소, 평가지표 및 세부평가방법

1. 방송의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의 실현가능성(종편 250점, 보도 3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1-1.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계획 (70점/90점)	1-1-1.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방안의 적정성 (30점/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방송사업 목표 및 비전의 적정성 ▪ 방송법 제5조(공적 책임) 실현방안의 구체성 ▪ 방송서비스의 보편성 구현계획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자·편성책임자·최대주주의 방송의 공적 책임·공정성·공익성 실현의지 등을 평가
	1-1-2. 방송의 공정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(20점/3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사·보도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여론 다양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▪ 선거 관련 방송의 공정성·객관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▪ 방송법 제6조(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) 실현방안의 구체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뉴스내용의 객관성 유지 및 보편적 가치 지향, 뉴스원 다원화 등 보도의 공정성·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 ○ 방송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라 산정된 시청점유율이 30%를 초과하는 경우 평가 ※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텔레비전 방송채널 시청점유율 및 일간신문 구독률(시청점유율로 환산)을 대상으로 산정
	1-1-3. 방송프로그램의 공익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(20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공익적 프로그램(비상업적 공익광고·캠페인 포함) 편성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 ▪ 재난방송 편성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 ▪ 방송언어 순화계획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▪ 방송법 제6조(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) 실현방안의 구체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익적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1-2. 지역·사회·문 화적 기여도 (70점/80점)	1-2-1. 사회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(30점/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·사회·문화적 기여계획의 비전 및 목표 등의 타당성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공익·자선 사업 등 사회적 기여실적 신청법인의 사회적 책임 이행방안의 우수성·구체성 신청법인의 일자리 창출 계획의 구체성·타당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간(2007년, 2008년, 2009년)의 사회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 국제표준화기구의 ISO26000* 실천방안 등을 평가 ※ 기업 등 단체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으로, 윤리적 행동·법치주의 존중 등 7개의 사회적 책임 원칙을 제시 일자리 창출 계획, 고용규모(직접 고용) 및 그 산정 근거 등을 인력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
	1-2-2. 지역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(20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지역적 기여 실적 신청법인의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 지역적 기여계획의 우수성·구체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간(2007년, 2008년, 2009년)의 지역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 활성화, 지역 밀착형 방송 프로그램 편성 등 방송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계획 등을 평가
	1-2-3. 문화적 기여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 (20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문화 보존·발전 등에 대한 기여실적 신청법인의 문화적 기여계획의 우수성·구체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근 3년간(2007년, 2008년, 2009년)의 문화적 기여실적 등을 평가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1-3. 신청법인의 적정성 (60점/70점)	1-3-1. 신청법인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(25점/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주구성의 다양성 등 정책목표 부합 여부 보도프로그램 편성 채널 중복 소유 여부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주구성의 다양성, 구성주주의 정책목표 실현의지 및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기존 보도 편성채널 처분계획 또는 사전 지정한 1개 사업의 승인신청 철회계획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미흡 시 감점 ※ 계획 미제출시 해당 세부심사항목 0점 처리
	1-3-2.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건전성 (20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법인(대표자·편성책임자 포함) 및 주요주주의 관련 법령 준수여부 		비계량
	1-3-3. 구성주주 중복참여 (15점/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분율 5%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해당 여부 지분율 1% 이상 5% 미만 중복참여 주주 해당 여부 	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복참여 주주의 지분율×해당 세부심사항목 배점만큼 감점 ※ 감점의 합이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을 초과하는 경우 0점 처리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1-4. 시청자 권익 실현방안 (50점/60점)	1-4-1. 소수 시청자 그룹 지원방안의 우수성 (20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청자 권익실현 계획의 수립 여부 및 적정성 ▪ 어린이·청소년 보호방안의 적정성 ▪ 장애인 지원방안의 적정성 ▪ 노약자·다문화가정·외국인 등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의 구체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어린이·청소년 프로그램 편성의 충분성을 평가 ○ 프로그램의 선정성·폭력성으로부터 어린이·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평가 ○ 장애인 지원 프로그램 편성의 충분성을 평가 ○ 자막, 수화,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의 시청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술적 방안 등을 평가 ○ 소수 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계획을 전체 방송 프로그램 편성계획과 연계하여 평가
	1-4-2. 시청자 참여방안의 적정성 (15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청자 의견 반영 등 시청자 참여 보장방안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▪ 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 (방송법 제87조) ▪ 시청자 평가프로그램 편성계획의 적정성 (방송법 제89조)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위원회 구성방안, 회의 개최 주기, 위원회 결정사항의 처리계획 등을 평가 ○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의 편성시간 및 내용, 시청자 평가원의 역할 등을 평가
	1-4-3. 시청자 불만처리계획의 적정성 (15점/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체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·적정성 (방송법 제86조) ▪ 시청자 불만처리 계획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자체심의기구 설치·운영계획, 자체심의 절차의 효율성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하여 평가 ○ 시청자 불만처리의 신속성·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평가

2. 방송프로그램의 기획·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(종편 250점, 보도2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2-1. 방송 프로그램 기획·편성 계획 (90점/80점)	2-1-1.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계획의 우수성 (35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의 타당성·우수성·실현가능성 ▪ 방송분야별, 장르별 편성계획의 우수성·적절성·실현가능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성계획의 방송법령 부합여부, 방송분야별·장르별 방송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, 재방송 비율, HD프로그램 편성계획, 방송광고 운용계획, 주간편성기본표 등을 평가 ○ 연도별 주요 프로그램의 기획의도, 장르, 방송내용, 제작원, 장르, 시청대상, 연간 편성편수 및 시간, 편당 소요시간 및 소요비용 등을 평가
	2-1-2.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의 독창성 (25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기획·편성의 독창성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의 참신성 ▪ 기존 종합편성(보도) 방송과의 차별성 확보방안의 구체성 		비계량
	2-1-3. 방송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(30점/3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편성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방안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편성규약(방송법 제4조제4항) 등을 평가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2-2. 방송 프로그램 수급계획 (80점/60점)	2-2-1.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적절성 (35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방송프로그램 수급계획의 구체성 및 전체 편성계획과의 정합성 ▪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계획의 우수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물과 국외물 수급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 ○ 자체제작 계획의 전체 편성계획, 소요비용 및 제작 인력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
	2-2-2.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(30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획의 적절성 		비계량
	2-2-3.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적절성 (15점/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적절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외 방송프로그램 구매계획의 전체 편성계획, 소요비용 등 경영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2-3. 방송 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 (80점/60점)	2-3-1.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적정성 (35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와의 협력 계획의 우수성·구체성 ▪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의 협력계획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▪ 방송콘텐츠 공정거래 관행 정착방안의 적정성·구체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외주제작사, 지역방송국 등 국내 방송프로그램 제작사 및 해외 콘텐츠 제작사와 프로그램 공동제작 (제작지원), 콘텐츠 공동 활용 등의 협력계획을 평가 ○ 콘텐츠 제작사 선정절차,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, 수익배분 방법 등을 평가
	2-3-2. 전략적 협력계획의 우수성 (25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규 플랫폼 진출계획의 구체성·우수성 ▪ 국내·외 콘텐츠 유통계획의 구체성·실현가능성 		비계량
	2-3-3. 방송프로그램 제작 협력계획의 방송산업 활성화 기여도 (20점/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방송프로그램 기획·편성 및 제작 계획의 방송산업 선순환 및 글로벌 경쟁력 기여 가능성 	비계량	

3.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(종편 200점, 보도 25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3-1. 사업 추진계획 (30점/40점)	3-1-1. 시장전망 및 경영전략의 적정성 (15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사업추진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▪ 시장전망의 합리성 및 목표점유율 설정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▪ 기업 내부 및 외부환경 분석의 적정성 ▪ 채널확보 방안 및 채널인지도 제고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▪ 플랫폼사업자와의 협력 또는 전략적 관계 구축계획의 구체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방송시장 등의 분석 및 예측방법, 추정재무제표(매출액 등)와의 정합성 등을 평가
	3-1-2.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서의 비전 및 전략의 우수성 (15점/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투자 및 사업운영 전략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		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3-2.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(30점/40점)	3-2-1. 조직 및 인력구성의 적정성 (15점/20점)	▪ 조직구조의 구체성 및 적정성	비계량	○ 조직구성과 사업추진계획 등의 적합성 등을 평가
		▪ 인력구성의 적정성		○ 분야별 소요인력 산정, 배치방안(직급별, 정규직·비정규직구분) 등을 평가 ○ 추정재무제표(인건비 등)와의 적합성을 평가
	3-2-2. 인력확보 및 교육훈련계획의 적정성 (15점/20점)	▪ 인력 확보 방안의 적정성	비계량	○ 신규인력충원 계획, 전문인력 확보계획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
		▪ 교육훈련계획의 우수성 및 적정성		○ 교육투자규모 및 교육의 종류, 방법 등을 평가 ○ 추정재무제표(교육훈련비 등)와의 적합성 등을 평가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
3-3. 납입자본금 규모 (60점/60점)	3-3-1.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(60점/6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납입자본금 규모의 적정성 	최초 납입 자본금 금액 (계량)	<p>□ 평가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법인이 설립예정법인인 경우 :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출자예정금액(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) 신청법인이 기존법인인 경우 : 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 실질자본금 및 승인장 교부 직전까지의 유상증자 예정금액(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) <p>□ 평가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가점수는 평가 소수점 네 자리 이하는 버리고, 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두 자리까지 산정 <p><종편PP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5,000억원 이상일 경우, 배점의 100% 3,000억원 초과 5,000억원 미만일 경우, 배점의 A% ※ $A=60+(\text{평가대상 금액}-3,000\text{억원})/50\text{억원} \times 1$ 3,000억원일 경우 배점의 60% 3,000억원 미만의 경우, 0점 <p><보도PP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00억원 이상 일 경우, 배점의 100% 400억원 초과 600억원 미만일 경우, 배점의 A% ※ $A=60+(\text{평가대상 금액}-400\text{억원})/5\text{억원} \times 1$ 400억원 일 경우 배점의 60% 400억원 미만의 경우, 0점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3-4. 자금 조달 및 운영계획 (35점/45점)	3-4-1.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(20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초 납입자본금 구성의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, 신청법인(기존법인에 한함) 및 주요주주의 이사회 결의서, 주요주주의 자금출자능력 등을 통해 출자(증자)예정금액의 실현가능성을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금 납입 관련 계약서 및 이사회 결의서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여 자본금 납입 실현가능성의 지속력을 평가 일정 수익을 보장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신청법인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는 사항 등이 있는지 여부를 평가 신청법인의 자금조달의 유동성을 저해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금조달원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금조달계획을 평가하며, 영업활동, 투자활동, 재무활동으로 구분하여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업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수익 추정방법의 적정성, 시장전망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재무활동을 통한 조달금액의 실현가능성은 차입 약정서 등을 평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금조달규모의 충분성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금운영금액 규모와 비교 평가
	3-4-2. 자금운영계획의 적정성 (15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설투자자금의 산출의 적정성 제작비 등 경상운영자금 산출의 적정성 기타자금 산출의 적정성 		비계량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3-5. 사업성 분석 (15점/25점)	3-5-1. 추정재무제표 및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(15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정재무제표의 적정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매출액(광고, 협찬, PP 수신료 수입 등) 구성 내역 등을 평가 추정재무제표는 1차년도는 분기별로, 2차년도 이후는 연도별로 평가 추정재무제표 금액 추정근거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추정현금흐름을 기초로 한 사업성 분석의 적정성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DCF 방법(NPV, IRR 등)에 의한 재무적 사업성 분석의 타당성을 등을 평가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3-6. 경영의 투명성·효율성 (30점/40점)	3-6-1. 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(15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표이사·이사회 등 경영진 구성 및 운영의 투명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 기업 지배구조를 평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감시기구의 적정성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감사위원회, 사외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방안의 실효성 등을 평가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 경영투명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액주주 보호 계획, 회계부분의 투명성 확보방안, 신청법인과 구성주주 간의 부당거래방지 방안 등을 평가
	3-6-2. 경영의 효율성 확보방안 (15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효율화에 대한 전략 및 비전 등의 적정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경영진의 관련업계 경력, 전문성, 주요 공헌 정도 등을 평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표자 등 임원, 편성책임자의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타 경영효율성 제고방안의 적정성 			

4. 재정 및 기술적 능력(종편 200점, 보도 15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
4-1. 재정적 능력 (90점/60점)	4-1-1. 자기자본 순이익률 (30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기자본순이익률 = 당기순이익/자기자본 ※ 자기자본은 기초와 기말잔액의 평균치 	자기자본 순이익률 (계량)	<p>□ 평가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09년 우리나라 전 산업 기업경영분석에 있는 업종(대분류 기준 14개 산업)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3년의 연도별 평균(X) 및 표준편차(σ)를 구하고, 이를 이용하여 평가 대상법인의 지난 3개년도의 지표값(A)에 대해 평가 평가기간 : 최근 3년(2009년, 2008년, 2007년) 평가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(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) <p>□ 배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으로 환산 부채비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대상회사의 지표 값 : A - $A > X + 2\sigma$: 최저점(40점) - $A < X - 2\sigma$: 최고점(100점) - 평균(X)로부터 2σ 범위 내 : 취득점수(Y) = $70 + 60 \times (X-A)/4\sigma$ 자기자본순이익률, 총자산증가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평가대상회사의 지표 값 : A - $A < X - 2\sigma$: 최저점(40점) - $A > X + 2\sigma$: 최고점(100점) - 평균(X)로부터 2σ 범위 내 기업의 취득점수(Y) = $70 + 60 \times (A-X)/4\sigma$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(다음 페이지 계속)</p>
	4-1-2. 부채비율 (30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채비율 = 총부채/자기자본 ※ 부채와 자기자본은 기말잔액 	부채비율 (계량)	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
4-1. 재정적 능력	4-1-3. 총자산 증가율 (30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총자산증가율 $= \left[\frac{\text{당기총자산}}{\text{전기총자산}} \times 100 \right] - 100$ 	총자산 증가율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3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,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평균치의 80%를 미제출 연도의 평가지표에 적용 ※ 총자산증가율에 한하여, 4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, 미제출 연도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평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단, 설립 후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연도 재무제표로 계산된 평가지표 산출 평균치의 80%를 미제출 연도와 관련된 평가지표에 적용 ※ 신청법인이 산출불능으로 제시한 자료는 최저점수 평가 ※ 5%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 <p>□ 가중치 배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도별 가중치는 최근 연도부터 5 : 3 : 2 ○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: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%로 환산하여 계산 ○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: 기존법인의 자본금(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)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출자금액(기존 출자금도 포함,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) 비율로 가중환산 <p>□ 점수계산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립예정법인 : 연도별로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주주별 점수를 계산한 후,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○ 기존법인 : 연도별로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하고 연도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기존법인과 주주별 점수를 계산한 후,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
4-2. 자금출자 능력 (60점/45점)	4-2-1. (현금 및 현금성자산 + 단기금융 상품) 對 투자(출자) 금액의 적정성 (15점/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(현금 및 현금성자산 + 단기금융상품) / 투자(출자)금액 	<p>(현금 및 현금성자산 + 단기금융상품) / 투자(출자)금액 (계량)</p>	<p><input type="checkbox"/> 평가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평가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(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) ○ 평가기간 : 신청공고일 직전 회계연도말 ○ 투자(출자)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존법인의 투자금액 : 내부잉여현금을 통한 2011년도 투자예정금액 - 주요주주의 출자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설립예정법인의 경우, 출자예정금액(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) · 기존법인의 경우, 증자 참여 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(자본금과 주식발행초과금의 합계) <p><input type="checkbox"/> 배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0점 만점으로 평가 후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배점으로 환산 ○ (현금 및 현금성자산 + 단기금융상품) / 투자(출자)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0% 미만 : 최저점(40점) - 50% 이상 ~ 60% 미만 : 50점 - 60% 이상 ~ 70% 미만 : 60점 - 70% 이상 ~ 80% 미만 : 70점 - 80% 이상 ~ 90% 미만 : 80점 - 90% 이상 ~ 100% 미만 : 90점 - 100% 이상 : 최고점(100점) ○ 자기자본 / 투자(출자)금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0% 미만 : 최저점(40점) - 100% 이상 ~ 150% 미만 : 50점 - 150% 이상 ~ 200% 미만 : 60점 - 200% 이상 ~ 250% 미만 : 70점 - 250% 이상 ~ 300% 미만 : 80점 - 300% 이상 ~ 350% 미만 : 90점 - 350% 이상 : 최고점(100점)

(다음 페이지 계속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
4-2. 자금출자 능력	4-2-2. 자기자본 對 투자(출자) 금액의 적정성 (15점/1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기자본 / 투자 (출자)금액 ※ 자기자본 = 자산 - 부채 	자기자본/ 투자(출자) 금액 (계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는 최저점수 평가 ※ 제출한 자료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최저점수 평가 ※ 5%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 □ 가중치 배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: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%로 환산하여 계산 ○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: 기존법인의 자본금(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)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유상증자 예정금액(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) 비율로 가중환산 □ 점수계산 방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설립예정법인 :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○ 기존법인 :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4-2. 자금출자 능력	4-2-3.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(30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	신청법인 및 주요주주의 신용등급 (계량)	<p>□ 평가개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평가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법인 및 주요주주(설립예정법인일 경우 주요주주만 평가) 평가기준 : 신청접수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(회사채) 평가 <p>□ 배점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신용등급</th> <th>배점비중</th> <th>신용등급</th> <th>배점비중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AAA</td> <td>100%</td> <td>BB+</td> <td>68.42%</td> </tr> <tr> <td>AA+</td> <td>96.84%</td> <td>BB</td> <td>65.26%</td> </tr> <tr> <td>AA</td> <td>93.68%</td> <td>BB-</td> <td>62.11%</td> </tr> <tr> <td>AA-</td> <td>90.53%</td> <td>B+</td> <td>58.95%</td> </tr> <tr> <td>A+</td> <td>87.37%</td> <td>B</td> <td>55.79%</td> </tr> <tr> <td>A</td> <td>84.21%</td> <td>B-</td> <td>52.63%</td> </tr> <tr> <td>A-</td> <td>81.05%</td> <td>CCC+, CCC, CCC-</td> <td>49.47%</td> </tr> <tr> <td>BBB+</td> <td>77.89%</td> <td>CC</td> <td>46.32%</td> </tr> <tr> <td>BBB</td> <td>74.74%</td> <td>C</td> <td>43.16%</td> </tr> <tr> <td>BBB-</td> <td>71.58%</td> <td>D</td> <td>40.00%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신용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최저점수 평가 ※ 5% 이상 중복참여 주주에 대해서는 최저점수 평가</p> <p>□ 가중치 배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립예정법인의 주요주주 간 가중치 : 주요주주의 지분율 합을 100%로 환산하여 계산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 : 기존법인의 자본금(신청공고일 직전 최근일의 자본금)과 유상증자 이후의 주요주주의 출자금액(기존 출자금도 포함, 주식발행초과금은 제외) 비율로 가중환산 <p>□ 점수계산 방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설립예정법인 :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주주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기존법인 : 기존법인 및 주요주주의 점수를 계산한 후 기존법인과 주요주주 간 가중치를 적용하여 해당 신청법인의 최종 평가 점수를 산출 	신용등급	배점비중	신용등급	배점비중	AAA	100%	BB+	68.42%	AA+	96.84%	BB	65.26%	AA	93.68%	BB-	62.11%	AA-	90.53%	B+	58.95%	A+	87.37%	B	55.79%	A	84.21%	B-	52.63%	A-	81.05%	CCC+, CCC, CCC-	49.47%	BBB+	77.89%	CC	46.32%	BBB	74.74%	C	43.16%	BBB-	71.58%	D	40.00%
신용등급	배점비중	신용등급	배점비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AA	100%	BB+	68.4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A+	96.84%	BB	65.2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A	93.68%	BB-	62.11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A-	90.53%	B+	58.95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+	87.37%	B	55.79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	84.21%	B-	52.63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A-	81.05%	CCC+, CCC, CCC-	49.47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BB+	77.89%	CC	46.32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BB	74.74%	C	43.16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BBB-	71.58%	D	40.00%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4-3. 기술적 능력 (50점/45점)	4-3-1. 방송시설 설치·운영계획 (30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채널 운영에 적합한 방송제작 및 편집 관련 시설설치계획의 적정성 ▪ 시설 운용 계획의 적정성 	비계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별도 증빙서류(설비투자계약서 등)를 통해 설비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 ○ 편성 및 제작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 ○ 자금운영계획(시설투자계획 등)과의 정합성 등을 평가
	4-3-2. 방송기술 확보 및 활용계획 (20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콘텐츠 제작, 후반작업 등 편집기술 확보계획의 적정성 ▪ 첨단 방송기술 활용 및 사업화 방안의 실현가능성 		비계량

5.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(종편 100점, 보도 100점)

심사항목	세부심사항목	평가방법		
		평가요소(내용)	평가지표	세부평가방법(예시)
5-1. 방송발전 기여계획 (40점/40점)	5-1-1. 방송산업 발전 기여 계획의 우수성 (25점/2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방송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 및 차별성 ▪ 방송장비 산업 기여계획 및 연구개발(R&D) 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▪ 방송인력 양성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	비계량	○ 방송기기산업 육성·지원계획, 방송 관련 교육·연수 기관과의 협력계획 등을 평가
	5-1-2.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계획의 우수성 (15점/15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 기여 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	비계량	○ 유료방송 플랫폼(위성방송, SO, 위성DMB, IPTV 등)과의 협력방안 및 PP와의 상생 협력방안의 우수성 등을 평가
5-2. 콘텐츠 산업육성·지원계획 (40점/40점)	5-2-1. 콘텐츠산업 육성계획의 우수성 (20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계획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	비계량	
	5-2-2. 콘텐츠 산업 기여계획의 우수성 (20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콘텐츠 산업 관련 사회환원계획 등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	비계량	○ 콘텐츠 관련 단체 지원 및 협력계획 등을 평가
5-3. 출연금 (20점/20점)	5-3-1. 정부에 대한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(20점/20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출연금 규모의 적정성 	출연금 규모 (계량)	<p><종편PP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00억원 이상 인 경우 배점의 100% ○ 100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의 0% <p><보도PP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5억원 이상 인 경우 배점의 100% ○ 15억원 미만인 경우 배점의 0% <p>※ 승인장 교부 이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 전액을 납부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0점 처리</p>